

2024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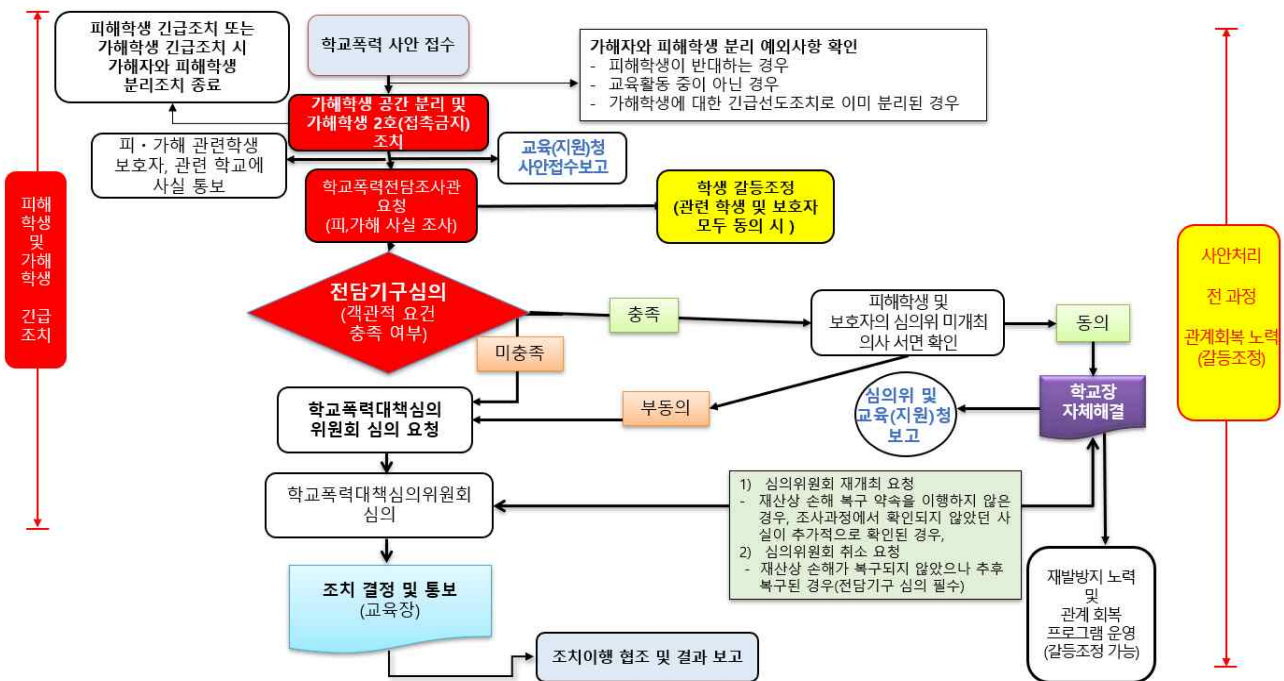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I. 학교폭력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II.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안인지 및 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 1차 사실 확인 이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피·가해사실 조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등을 합니다.

-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 4가지 객관적 요건 충족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 ⇒ 자체해결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24.>

* 전담기구 심의사항 (객관적 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짓는 절차로 피·가해 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 *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가해학생 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처분
	6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피·가해 학생 조치 결정 및 통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인천 갈월초등학교장